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2. 10. 7.

운영위원회

1. 심 사 경 과

가. 발의일자: 2022년 9월 18일

나. 발 의 자: 유승용 의원 외 3명

다. 회부일자: 2022년 9월 22일

라. 상정일자: 제239회 영등포구의회 2022년도 제1차 정례회

제1차 운영위원회(2022. 9. 28.)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유승용 의원)

가. 제안이유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정('22.05.19.시행)에 따라 같은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과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이 일부개정('22.06.02.시행)되어 이를 반영하고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 구성의 양성평등을 도모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22.05.19.시행) 내용과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규정 삭제(안 제4조~제8조, 안 제15조, 안 제23조)
- 규정 삭제로 인한 용어 정비 및 개념 명확화(안 제17조, 안 제18조)
- 자문위원회 구성 시 양성평등을 위한 단서 신설(안 제29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전문위원: 김옥연)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과 중첩되는 관련 법 규정을 삭제하고 관련 용어 정비 및 필수 사항을 규정하고자 한 것으로 판단됨.

4. 심사결과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유승용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8
----------	---

발의년월일: 2022년 9월

발의자: 유승용 의원 외 3명

1. 제안이유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 제정됨에 따라, 같은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과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이 일부 개정되어 이를 조례에 반영하고 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가. 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등 삭제(안 제4조)
- 나. 의장 등의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 제출 삭제(안 제5조)
- 다. 직무 관련 조언·자문 등의 제한 삭제(안 제6조)
- 라. 가족 채용 제한 삭제(안 제7조)
- 마. 수의계약 체결 제한 삭제(안 제8조)
- 바. 공용물의 사적 사용·수익의 금지 등 삭제(안 제15조)
- 사. 직무관련자 거래 등의 신고 삭제(안 제23조)

3. 개정안: “별첨”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 나. 예산조치: 해당 없음
- 다. 입법예고: 생략.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 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부터 제8조까지 및 제15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17조제2호 중 “**전가**”를 “**전가(轉嫁)**”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해당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산하기관**”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로 하며, 같은 호에 각 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해당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산하기관**”을 “**제3호 각 목의 기관 또는 단체**”로 한다.

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

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중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업무를 관장하는 공공
기관

다.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중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업무를 관장하는 공직유관단
체

제18조제4항 중 “**사실을**”을 “**사실을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

다)으로”로 한다.

제23조를 삭제한다.

제29조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특정 성별이 자문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해당 분야에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이 부족한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반행위에 대한 징계 요국 등 조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제4조부터 제8조까지, 제15조 및 제23조를 위반한 행위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제26조제5항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제4조(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등)</u> <u>① 의원은 의안 심사, 예산 심의,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등(이하 “안건심의 등”이라 한다) 직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의장 및 자신이 소속된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장에게 미리 그 사실을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신고해야 한다. 이 경우 의원은 스스로 안건심의 등을 회피할 수 있다.</u> <u>1. 의원 자신이 직무관련자인 경우</u> <u>2. 의원의 4촌 이내의 친족(「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이 직무관련자인 경우</u> <u>3. 의원 자신이 2년 이내에 재직했던 법인·단체가 직무관련자인 경우</u> <u>4. 의원 자신 또는 그 가족(「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임직원</u>	<u><삭 제></u>

또는 사외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법인·단체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5. 의원 자신 또는 그 가족이 직무관련자를 대리하거나 직무관련자에게 고문·자문 등을 제공하거나 해당 대리·고문·자문 등의 업무를 하는 법인·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경우

6. 의원 자신 또는 그의 가족이 의장이 정하는 일정 비율 이상의 주식·지분, 자본금 등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단체(이하 “특수관계사업자”라 한다)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7. 그 밖에 의장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려운 관계에 있다고 판단하여 정하는 자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② 의원이 직무 수행 중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적 이해관계가 있음을 안 때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5일 이내에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③ 의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으면 지방의회 또는 해당 의원이 소속된 소관 상임 위원회는 의결로써 그 의원을 안전심의 등으로부터 배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원은 본회의 또는 해당 상임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④ 의장은 제3항에 따른 의결의 대상이 된 의원에게 그에 대한 의견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의원은 지체 없이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⑤ 의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회피,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의결·의견제출 등에 관한 현황을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기록·관리해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의원의 사적 이해관계 신고 등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정한다.

제5조(의장 등의 민간 분야 업무 활동 내역 제출) ① 의장, 부의

<삭 제>

장 및 상임위원회 ·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그 임기를 개시한 날
부터 30일 이내에 의원 임기 개
시 전의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
역(의원 임기 개시 전 3년간의
내역을 말한다)을 의장(의장이
제출하는 경우에는 윤리특별위
원회 위원장을 말하며, 윤리특
별위원회 위원장이 없는 경우
는 운영위원회 위원장을 말한
다)에게 별지 제4호 서식에 따
른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민간 분야 업
무활동 내역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재직했던 법인 · 단체와 그
업무 내용
2. 관리 · 운영했던 사업 또는
영리행위의 내용
3. 그 밖에 의장이 정하는 사항

③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을 보
관 · 관리해야 한다.

제6조(직무 관련 조언 · 자문 등의
제한) ① 의원은 직무와 관련하
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삭 제>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직무관련자에게 사적으로 노무 또는 조언·자문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행위

2. 소속 지방의회가 쟁송 등의 당사자가 되는 직무이거나 그 지방의회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직무인 경우에 그 지방의회의 상대방을 대리하거나 상대방에게 조언·자문 또는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3. 외국의 정부·기관·법인·단체를 대리하는 행위. 다만, 의장이 허가한 경우는 제외한다.

4. 그 밖에 의장이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정하는 직무 관련 행위

② 의장은 의원의 행위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의원에게 행위를 중지하거나 종료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7조(가족 채용 제한) 의원은 소

<삭 제>

속 지방의회,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 및 그 지방자치단체의 산하기관(「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자신의 가족이 채용되도록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

제8조(수의계약 체결 제한) ① 의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산하기관과 물품·용역·공사 등의 수의계약(이하 “수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해서는 안 된다.

② 의원은 자신의 가족이나 특수관계사업자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산하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

제15조(공용재산의 사적 사용·수익의 금지 등) 의원은 각종 공용물과 예산의 사용에 따라 부수적으로 발생한 항공마일리지, 적립포인트 등 부가서비스를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수익해서는 아니 된다.

<삭 제>

<삭 제>

제17조(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
당 행위의 금지) 의원은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
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당
한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1. (생략)

2. 소속 지방의회의 물품·용역
·공사 등 계약과 관련하여
직무관련자에게 그 지방의회
의 의무 또는 부담의 이행을
부당하게 전가하거나 지연하
는 행위

3. 해당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산하기관에
소속 지방의회의 업무를 부당
하게 전가하거나 그 업무에
관한 비용·인력을 부담하도
록 부당하게 전가하는 행위

<신설>

<신설>

제17조(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
당 행위의 금지) -----

-----.

1. (현행과 같음)

2. -----

----- 전가(轉嫁)-----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

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집
행기관

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
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중 해당 지
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신 설>

4. 그 밖에 직무관련자, 해당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산하기관의 권리·권한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의무가 없는 일을 부당하게 요구하는 행위

제18조(금품 등의 수수 금지) ① ~ ③ (생략)

④ 의원은 제3항제4호에도 불구하고 같은 호에 따라 특별히 장기적·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직무관련자로서 금품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그 수수 사실을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의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⑥ (생략)

제23조(직무관련자 거래 등의 신

따라 업무를 관장하는 공공기관

다.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중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업무를 관장하는 공직유관단체

4. ----- 제3호 각
목의 기관 또는 단체-----

제18조(금품 등의 수수 금지)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 사실을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
--.

⑤·⑥ (현행과 같음)

<삭 제>

고) ① 의원은 자신, 배우자, 직계존속·비속(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특수관계사업자가 다른 의원 또는 의원 자신의 직무관련자와 직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무상인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라 의장에게 미리 신고해야 한다.

1.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행위 및 유가증권을 거래하는 행위. 다만,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통상적인 조건으로 금전을 빌리는 행위 및 유가증권을 거래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2. 부동산, 자동차, 선박, 항공기, 건설기계,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재산을 거래하는 행위. 다만, 공매·경매·입찰 및 공개추첨(이하 “공매등”이라 한다)을 통한 거래 행위는 제외한다.

다.

3. 제1호 및 제2호의 거래 행위

외에 물품(일상생활용품은 제
외한다), 용역, 공사 등의 계약
을 체결하는 행위. 다만, 공매
등을 통한 계약 체결 행위 또
는 거래관행상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행해지
는 계약 체결 행위는 제외한
다.

② 의원은 자신, 배우자, 직계존
속·비속 또는 특수관계사업자
가 의원 자신의 직무관련자였던
사람과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
우에는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
라 의장에게 미리 신고해야 한
다. 다만, 그 직무관련자와 관련
된 직무 수행이 종료된 날부터
2년이 지난 경우에는 그렇지 않
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
고 다른 의원이나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자였던 사람이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
인 경우는 신고대상에서 제외한

다.

④ 의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전 신고가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거래 등의 행위를 마친 날부터 5일 이내에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라 의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다만, 의원 자신의 거래 등의 행위가 아니거나 제3자가 중개 또는 대리하여 거래한 경우로서 미리 이를 알고 신고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거래 등의 사실을 안 날부터 5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⑤ 의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의원이 신고한 행위가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의원에게 안전심의 등 직무를 회피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제29조(자문위원회의 구성) ① (생략)

② 자문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상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영등포구 소속 공무원, 의원 또는 정당의 당원은 위원이 되지 못한다. <단서

제29조(자문위원회의 구성) ① (현행과 같음)

② -----

----- . 다만,

<u>신설></u>	<u>특정 성별이 자문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해당 분야에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이 부족한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u>
③ (생략)	③ (현행과 같음)